제1017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 염업조합의 업무정지 세부기준(신설) ㅇ 임원에 대한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의 개선(改選) :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 임원의 직무정지 : (1차) 업무정지 2개월 (2차) 업무정지 4개월 ㅇ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의 면직 : (1차) 업무정지 2개월 (2차) 업무정지 4개월 – 직원의 정직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2개월 – 직원의 감봉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ㅇ 그 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 심사 완료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추가(강화) ㅇ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공시사항 명확화·구체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	규제 심사 완료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신설) ㅇ 과기정통부장관은 다음 기관 ·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법정 지정) –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인공지능 관련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설치 및 지정(신설) ㅇ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지정 요건 설정 – 기관의 자격요건 명시 및 전문성 확보 기준 마련 – 전담 인력, 입지, 시설 등 실질적 운영능력 요건 설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규제 심사 완료
		3.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요건(신설) ㅇ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요건 및 인가절차 규정 ㅇ 기존 비영리법인의 협회 지정 요건 및 절차 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제 심사 완료
		4.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방법(신설) ㅇ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 방법 구체화 – 제품 직접 기재, 화면 표시, 장소 게시 등 구체적인 방법 제시 ㅇ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방법 규정 –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 ㅇ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기준 명시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하되, 주된 이용자 특성 고려 ㅇ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예외사항 규정 – 인공지능 운용 사실이 명백하거나 내부 업무용인 경우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 기준(신설) ㅇ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준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10^26 이상으로 설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ㅇ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기술 발전에 따른 산정 방식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규제 심사 완료
		6.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신설) ㅇ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 인공지능사업자의 확인 요청 절차 및 서식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판단기준 및 회신 기한 명시(30일) – 재확인 요청 절차 및 (재확인시) 전문위원회 자문 의무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규제 심사 완료
		7.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이행(신설) ㅇ 문서화 및 보관 의무 –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 – 체계적인 이행 내역 관리 및 사후 검증 가능성 확보 ㅇ 공시 의무 –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방안, 관리 · 감독 담당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 의무에서 제외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ㅇ 이용사업자 의무 경감 및 타법령 조치 인정 – 개발사업자가 이미 조치를 이행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중대한 기능 변경 없이 제공받은 경우 조치 이행으로 간주 – 다른 법령의 안전성·신뢰성 관련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인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8. 국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다리인 지정 의무(신설) ㅇ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국외 사업자 기준 마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규제 심사 완료
4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조사 대상 선정 기준(신설) ㅇ (현행)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 수는 심사 대상 농가 수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를 포함하여 다음 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ㅇ (개정안) 인증 건 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를 포함하되 인증 심사과정에서 선정되었던 농가 및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가 이루어진 농가를 제외한 농가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실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규제 심사 완료
		2. 인증심사의 생산자 집단 표본추출 대상 농가수 확대(강화) ㅇ 생산자단체의 인증신청에 따른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표본추출 농가수를 확대하여 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 강화 ㅇ (개정안) 11명 이상 ~ 40명 이하 : 제곱근, 41명 이상 : 15% 이상 추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 농약사용 시 준수사항(강화) ㅇ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을 선정하여 안전사용기준(농약의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그 외의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됨 – 현 작기에 재배 중인 농산물을 기준으로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이전 작기에 사용한 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부적합 처리)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5조	규제 심사 완료
		2. 농산물 저장단계의 오염방지 관리(강화) ㅇ 수확 및 운송 이외에도 인증 농산물 수확 후 저장 시, 저장공간에 유해물질(농기계 및 자재, 오일, 비료, 농약 등)과 함께 두지 말 것을 규정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5조	규제 심사 완료
		3. 수확 후 농산물에 해충, 동물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강화) ㅇ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하는 유해생물을 반려동물까지 확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5조	규제 심사 완료
6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안 (경찰청)	1.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신설) ㅇ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성 · 기능 · 형식 · 특성, 성능 기준, 설치 기준 및 방법, 인증 기준을 정함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Ⅳ 구성,기능,형식,특성 Ⅴ 성능기준, Ⅵ 설치기준 및 방법, Ⅷ 인증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치 이격 기준(신설) ㅇ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이격 기준 추가 ㅇ 충전장치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17.3,제241.17.5	규제 심사 완료
8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강화) ㅇ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상향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4조	규제 심사 완료
		2. 보급실적 산정방법(강화) ㅇ 제1종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만 1대당 1점으로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5조	규제 심사 완료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평가 기준 및 지정 취소(신설) ㅇ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은 수련환경, 수련운영, 수련자원 등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수련기관 평가를 3년 마다 받아야 함 ㅇ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또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 절차조력인 자격 및 결격사유(신설) ㅇ 법 제 38조의2(절차조력)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퇴)원등을 할 때 절차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이와 관련, 절차조력인이 될수 있는 자격 및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대상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제 심사 완료
		3.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신설) ㅇ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 약사 및 영양사 배치 기준 규정 – (약사) 정신병원은 1명 이상을 두며,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법에 따르도록 함 – (영양사) 정신병원은 입원 병상을 갖춘 경우 1명 이상을 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법에 따르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 심사 완료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 알룰로오스의 제조기준 개정(강화) ㅇ「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 중 알룰로오스에 대한 주석 신설 ※ (주석) 이 원료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효소제는「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 위 고시에 따라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별표3	규제 심사 완료